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2619)

2025. 4. 2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강석주 의원 발의]

의안번호 2619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강석주 의원 대표발의(외 5명)

나. 제출일자 : 2025년 03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04월 07일

2.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서울시 역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이에 따라 모든 연령에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상위법인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시장의 책무 및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 또한, 노후준비서비스의 체계적인지원을 통해 노인 빈곤과 고립을 예방하고,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노후준비지원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규정(안 제4조)
-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안 제5조)

-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후준비 지원법 및 시행령」 등
- 나.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조례안의 개요

- 본 제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모든 연령에서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시장의 책무 및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준비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노인 빈곤과 고립을 예방하고,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되었음.

※ 제31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중장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보류된 바 있음.

- 당시 조례안은 노후준비 지원 대상을 ‘중장년’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40세 이상 만60세 미만의 사람으로 명시함

- 본 제정안은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2조(정의)	제7조(보고·검사 등)
제3조(시장의 책무)	제8조(협의체 구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시행규칙)
제5조(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부 칙

가. 조례 제정의 의의

- 고령화사회와 관련한 기본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노후설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112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음.
- 본 조례는 노후준비의 지원대상을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모든 국민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그 대상을 달리하고 있음.
- 현재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중장년층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중장년층(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음.

〈 서울시 조례상 중장년 연령 구분 〉

구 분	연령구분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중장년 : 만 40세 ~ 만 65세 미만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중장년층 : 만 40세 이상 ~ 65세 미만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장년층 : 만 40세 이상 ~ 65세 미만

- 또한, 기존의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중장년층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리 본 조례는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노후 준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9357호, 2024. 7.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 2024.7.15.>

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9353호, 2024. 7.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특별시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5.>

- 현재 4곳의 지자체에서 ‘노후준비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제정 현황 〉

번호	자치단체	조례명
1	경기도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3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25년 4월 4일 기준).

나. 목적, 정의 및 책무 관련(안 제1조~안 제3조)

-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를 통해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21.12.21.)에 따라 시·도지사는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광역노후준비협의체 구성·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지역노후준비협의체 구성·운영할 수 있음.
- **노후준비 지원법** 제9조의2에서 ‘시·도지사가 노후 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8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기반조성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광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절차, 평가방법, 폐지·휴지·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를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2.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④ 지역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절차, 평가방법, 폐지·휴지·재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특별시장을 포함한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8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모든 영역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의 시행계획은 기존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의 지원계획이 중장년 일자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과 달리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항을 포괄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3.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u>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u> 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사업비 지원과 보고·검사 등(안 제5조~안 제7조)

-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은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의 사업 내용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의 재단 사업과도 상이함.
- 노후준비지원센터 사업은 노후준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서비스 연계, 홍보, 인식 제고 등 광범위한 지원을 포함함.
- 반면,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중장년층에게 교육·취업훈련·일자리·사회공헌·건강·문화·여가 등 특정 분야 중심의 지원을, 50플러스 재단은 취업지원, 사회공헌활동지원, 문화·여가 지원사업과 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 조례안의 노후준비지원센터 사업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재단의 사업
제5조(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u>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기반조성</u> <u>2. 시·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u> <u>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u> <u>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u> 5. 그 밖에 시장이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u>1. 교육 지원사업</u> <u>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u> <u>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u> <u>4. 건강증진 지원사업</u> <u>5. 문화·여가 지원사업</u>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2. 50플러스센터 정책 지원 3. 중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 · 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u>4. 중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u> <u>5. 중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u> 6. 중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 · 보급 7. 중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8. 중장년층 사업 관련 민 · 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 연계 9.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에서는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추진계획」에 따라 중장년을 대상으로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실국본부별 추진 사항에 복지실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운영’이 주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음.

<서울런 4050추진 관련 실·본부·국 추진 사항>

기관	주요 내용
기획조정실	▶ 실·본부·국 중장년 종합대책 총괄 지원 ▶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경제정책실	▶ 중장년 기술창업 프로그램 강화 ▶ 중장년 전직 특화교육과정 확대 ▶ 중장년 맞춤형 뉴딜일자리 발굴 등 ▶ 지하철 이용시민 안전 확보 사업 추진 ▶ 중장년1인 미디어 창작자 육성
여성가족정책실	▶ 중장년 여성 일자리매칭데이 확대 추진
복지정책실	▶ 중장년 맞춤형 법률/경제교육 추진 등 ▶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운영
문화본부	▶ 중장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추진 등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 서울공예박물관 전시해설사 운영
관광체육국	▶ 중장년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
평생교육국	▶ 미네르바형 직업전환 지원체계 구축 ▶ 대학연계 학습 및 학점연계 위한 일자리관련 전문교육 강화 ▶ 미래사회 직업능력 개발 교육 ▶ 기업 연계 중장년 취업 지원 ▶ 보람일자리 운영 확대, 중장년 인턴십 활동 지원 ▶ 생애설계진단 및 성장형 포트폴리오 지원 ▶ 중장년 ‘활력+행복 타운’ 조성, 서울런 4050 구축 등
시민건강국	▶ 중장년 건강관리 지원체계 운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행정국	▶ 중장년 도전형 자원활동 ‘모아시간’ 추진(자원봉사센터)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DX) 프로젝트 추진 ▶ 퇴직노동자 재취업 아카데미 운영
디지털정책관	▶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 ▶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추진, 디지털 플라자 조성 ▶ 디지털 어디나 지원단 운영
푸른도시여가국	▶ 우리동네 펫돌보미 양성,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 시민녹색교육 프로그램 등

※2022년 평생교육과-29909(2022.12.22.) 참조

- 정부에서는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 시행(‘15. 12. 13) 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https://csa.nps.or.kr/main.do>)를 지정·운영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를 지원하고자 ‘진단·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임.



-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국민 모두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처하고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마. 협의체 구성(제8조안)

- 본 조례에서는 시장이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노후준비 지원법 제9조의2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88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9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② 시·도지사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 집행기관 의견(복지실 어르신복지과)

- 본 조례제정안의 상위법인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노후준비 관련 책무와 노후준비 지원센터 운영 사항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조례제정안에 대한 담당부서 사전검토를 요청하였고,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함.
- 단, 노후준비 지원 업무는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는 50+재단과도 관련이 있어 평생교육국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전달함.

3 종합의견

-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이며,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의2 및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의 노후준비 지원 대상이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민’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도모하며, 기존 조례(「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노후준비 지원을 보다 포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다만, 현재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에서는 「전환기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 추진계획」에 따라 중장년을 대상으로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경제 활동 기획 확대 및 노후준비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추후 관련 사업 진행에 있어 연관 부서와의 논의를 통해 역할과 기능을 조율하고, 필요시 상호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문 의 처

02-2180-8140

사 업 명		구분	담당부서
1. 직업역량 강화			
1-① 미네르바형 직업역량 지원체계 구축운영			
1	40대 특화 직업전환 전문 교육	신규	50플러스재단
2	인생전환 지원센터 조성 운영	신규	평생교육과
1-② 미래변화 적응을 위한 맞춤형교육 확대			
3	대학연계 학습 및 학점연계 위한 일자리관련 전문교육 강화	확대	평생교육진흥원
4	미래사회 직업능력 개발 교육	확대	50플러스재단
5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교육	신규	빅데이터담당관
6	슬기로운 직업생활 플랜B지원 사업	확대	평생교육진흥원
1-③ 중장년층 평생학습 경비 지원 (7번)		신규	평생교육과/평생교육진흥원
2. 일자리 지원			
2-① 중장년 재취업 일자리 창출 지원			
8	중장년 전직 특화교육과정 확대 운영	확대	일자리정책과/경제정책과
9	중장년 퇴직노동자 재취업 아카데미 운영	확대	노동정책담당관
10	기업 연계 중장년 취업 지원	확대	50플러스재단/일자리정책과
11	지역과 함께하는 중장년 여성 일자리매칭데이 확대	확대	양성평등담당관
12	중장년 인턴십 활동 지원	확대	50플러스재단
2-② 원스톱 창업·창직 지원			
13	중장년 기술창업 프로그램 강화	신규	창업정책과
14	중장년 창업·창직 사관학교	신규	50플러스재단
2-③ 일자리 경험 및 지역사회 활동 강화			
15	보람일자리 운영 확대	확대	평생교육과/50플러스재단
16	중장년 지역사회 돌봄단 운영	확대	50플러스재단
17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중장년 프로보노단	확대	50플러스재단
18	중장년 도전형 자원 활동「모아 시간」	신규	자원봉사센터
19	교육약자 맞춤형 활동관리 지원	확대	평생교육과
20	중장년 맞춤형 뉴딜일자리 발굴	신규	일자리정책과
21	중장년 일자리를 통한 지하철 이용시민 안전확보	신규	일자리정책과
22	중장년1인 미디어 창작자 육성	확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23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기존	문화재관리과
24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기존	조경과
25	우리동네 펫돌보미 양성·운영	신규	동물보호과
26	서울공예박물관 전시해설사 운영	신규	서울공예박물관

사 업 명		구분	담당부서
3. 디지털 역량강화			
3-① 생활속 디지털 약자 불편 해소			
27	디지털전환 역량 개발 교육	확대	50플러스재단
28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DX) 프로젝트 추진	신규	소상공인담당관
29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디지털정책담당관
30	디지털 어디나 지원단 운영	확대	서울디지털재단
31	미래 시민 에티켓, 디지털 시민성 교육	확대	평생교육진흥원
32	디지털 동행플라자 조성	신규	디지털정책담당관
33	챗봇 서울톡 중장년 서비스 지원	확대	정보시스템담당관
34	메타버스 서울 중장년 전용 메타캠퍼스	신규	평생교육진흥원
4. 생애설계 · 노후준비			
4-① 생애전환기 중장년을 위한 인생설계학교 운영			
35	중장년 인생설계학교 운영	신규	평생교육진흥원
36	생애설계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성장형 포트폴리오 지원	확대	50플러스재단/ 평생교육진흥원
37	생애설계 준비지표 개발 및 활용	신규	50플러스재단
4-②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38	중장년 대상 맞춤형 법률 교육	확대	복지정책과/서울복지재단
39	안정적인 생활관리를 위한 중장년 맞춤형 경제교실 운영	신규	복지정책과/서울복지재단/ 서울도서관/평생교육진흥원
40	중장년 건강관리 지원체계 운영	확대	보건의료정책과/스마트건강과
41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	확대	정신건강과
42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운영	신규	어르신복지과
4-③ 풍요로운 인생 2막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43	다시 나를 찾는 문화·여가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	평생교육진흥원
44	중장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확대	문화정책과/문화예술과/문화재정책과/ 한성백제박물관/서울문화재단
45	중장년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체육진흥과
46	시민녹색교육 프로그램	기존	조경과
5. 인프라 조성			
5-① 중장년 “활력+행복 타운” 조성 (47번)		신규	평생교육과
5-② 학습-일자리 원스톱 플랫폼 서울런 4050 구축(48번)		확대	평생교육과